



: 2018-12-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392 디자인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김민주(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B
판 결 선 고 2018.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달성군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네이버 스토어 팜 사이트 내에 'C'라는 상호로 유아용 물건 판매를 영업으로 하던 중 해외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디자인권자인 주식회사 블렛유가 2015. 9. 30.경¹⁾



30-0818262호로 디자인등록한, 꿀벌의 더듬이, 몸통 및 날개 모양인 유아용 목베개와 디자인이 동일한 물품을 매수한 후 그 무렵 이를 고객에게 1개당 2만 3,000원에 유상 양도하여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고소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위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고소인의 영업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증빙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모방상품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기록에 의하면 오기입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
: 2018-12-2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선 _____